스카우트 장학기금 운영 규정

(제13차 개정 2018. 10. 3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스카우트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, 한국스카 우트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앙본부에 장학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01. 12. 29.)

제2조(기금) 본 장학기금은 스카우트 장학기금과 유지의 성금으로 한다. (개정 80.4.1.)

제3조(위원회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되 본 연맹 이사회에서 선임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1. 위원장 부총재 (개정 82. 3. 27.)

2. 위원 6명 이상 (개정 82. 3. 27.)

3. 감사 1명

4. 간사 1명

제4조(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년2회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 당해 연도의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. (개정 90. 2. 20.)

-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심의 처리하고 본 연맹 이사회 및 전국총회에 보고한다. (개정 90. 2. 22.)
- 1. 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사업보고 및 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
- 2.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기금 증액에 관한 사항
- 4.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선발 및 수여에 관한 사항
- 5. 장학금의 지급액수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

제5조(기금의 관리) 기금의 관리는 중앙본부의 별도 계정을 설치 운영 관리하되 그 과실로써 운영한다.

- 제6조(장학금 지급대상자) 본 위원회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대상자 중에서 선발한다.
 - 1. 한국스카우트연맹 포상규정에 의하여 선발되는 명예스카우트 (개정 90. 2. 22.)
 - 2. 지방·특수연맹 연맹장 및 사무총장이 추천하는 모범적인 대원 (개정 09. 11.

13.)

- 3.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청소년 (개정 18. 10. 31.)
- 4.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(개정 18. 10. 31.)
- 5. 재난에 따른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(신설 18. 10. 31.)
- 6. 스카우트 회원국 청소년 (신설 18. 10. 31.)
- 제7조(추천 절차) 장학스카우트의 추천은 당해 연도 장학스카우트 배정인수 이상을 다음에 의거 추천한다. (개정 04. 12. 16.)
 - 1. 중앙본부는 사무총장이 추천한다.
 - 2. 지방·특수연맹은 지방명예회의 심의를 거쳐 연맹장이 추천한다. (개정 09. 11. 13.)
- 제8조(장학스카우트 수와 지급액) 장학스카우트 수와 지급액은 장학위원회의에서 정한다.
- 제9조(지급 기간)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.
- 제10조(지급 신청절차) ① 스카우트 장학생인 경우 지방·특수연맹 연맹장 및 사무 총장은 장학스카우트로 추천하는 대원의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일 내 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09. 11. 13.)
 - 1. 장학스카우트 지원서
 - 2. 지방·특수연맹 연맹장 추천서 (개정 09. 11. 13.)
 - 3. (삭제 18. 10. 31)
 - 4. (삭제 04. 12. 16.)
 - 5. 활동계획서(대학생 부문의 경우) (신설 18. 10. 31.)
 - ② 비스카우트 장학생인 경우 연맹에서 정한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. (개정 18.10.31.)
 - 1. (삭제 18. 10. 31)
 - 2. (삭제 18. 10. 31)
 - 3. (삭제 18. 10. 31)
 - 4. (삭제 18. 10. 31)
- 제11조(장학금의 수령) 장학스카우트로 선발된 대원은 다음 서류를 중앙본부에 제출하고 장학금을 수령한다.
 - 1. 삭제 (개정 07. 12. 20.)
 - 2. 영수증 1통

- 제12조(장학금 지급중단) 장학스카우트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.
 - 1. 스카우트 활동을 중단하였을 때
 - 2. 퇴학, 정학,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스카우트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 - 3.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 하였을 때
- 제13조(장학스카우트의 신상사유 보고 의무) 장학스카우트 또는 소속대의 육성단체대표와 지방·특수연맹 사무처장은 장학스카우트의 수학 상황에 관하여 본 위원회와 협의하고 전학, 전과, 휴학, 정학 또는 스카우트 활동의 중단 및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09. 11. 13.)

부 칙

- 1. (적용) 장학금 운영 시행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 및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- 2. (위원의 임기)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최초 임원의 임기는 1978년도 전국총 회일까지로 한다.
- 3. 이 규정은 1976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4. 이 규정은 1978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5. 이 규정은 198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6. 이 규정은 1982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7. 이 규정은 1987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8. 이 규정은 1990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9.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10.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11.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12.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13.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14.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15.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16.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